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대응기금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 등 >
■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63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후대응기금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 등	3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5일 정혜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자원 배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함(안 제70조).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함(안 제71조).

III. 검토의견

1. 기후대응기금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 등

개정안은 ① 기후대응기금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고, ②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0%를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의2 및 안 제7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70조(기금의 용도) ① ----- ----- -----.
1.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1의2.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
2. ~ 11. (생략) <신설>	2. ~ 11.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지출액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 ----- -----500에----- -----

현행	개정안
여야 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이에 기금 조성을 위해 제71조²⁾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교

-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통·에너지·환경세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후 대응기금에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0조³⁾에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기술 개발 및 적응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후대응기금 현황(2025.12.기준)]

구분	기후대응기금
조성연도	2022년
누적 조성액	91,006억원
누적 사용액	87,271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지역기후대응기금 현황(2025.12.기준)]

구분	기후대응기금 조례 제정	비고
서울특별시	2023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2025년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2024년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라남도	2022년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 지역기후대응기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규모 및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0%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기금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금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자립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국가 기금을 배분하기보다 지방정부 자체재원 또는 지방교부세로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 현행 재정체계에 보다 부합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일반회계(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중앙정부의 기금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을 통해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는 기금 운영·관리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점, 관리·심사·성과 체계가 다원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 성과 관리 및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4년 기준 약 11.4조 원이 징수되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68%, 환경개선특별회계에 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2% 등으로 배분⁴⁾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배분 비율을 현행 7%에서 43%p^p 상향하여 50%로 확대할 경우,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어 해당 특별회계의 기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분 구조 변경에 따른 재정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및 지방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회계 등의 전입에 대한 의존보다 자체수입 확대

4)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2025.4.

가 바람직한 기금 고유의 특성⁵⁾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기획예산처는 지역기후대응기금은 지방 조례로 설치하는 지방사무이므로 국비 지원이 곤란하며 교부세를 통해 지자체 행정 및 사업에 이미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고,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 비율은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므로, 특정 수입을 통한 자금의 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문 의 처
02)6788-5536